



공공정보 유통 지원 사업 세미나

선진국선 천문학적 부가가치 창출 입증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이하 한국DB진흥센터)가 주관한 공공정보 유통 지원 사업 세미나가 '공공정보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시장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1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타당성 측면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세미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현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글 양기석 기자 사진 이해성 기자

이번 세미나의 테마인 공공정보 유통지원 사업이란 공공기관에서 생산,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민간사업자가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공정보의 유통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현재 한국DB진흥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정보의 유통사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국내에서는 미국, EU 등 외국과 달리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 이에 한국DB진흥센터에서는 그간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정책, 제도 마련, △공공정보 제공, 활용 관련 업무 지원이라는 두 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창한 한국DB진흥센터 실장은 "선진국

에서는 이미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되어 민간에서 이를 이용한 사업화가 시도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상업적 활용 근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법, 제도 등이 정비되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일반국민 사이의 정보 유통체계가 정착되고 정보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① 이창한 한국DB진흥센터 실장을 공공정보 유통 관련 법, 제도 등이 정비되면 정보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② 공공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홍준형 서울대 교수.
 ③ 이영대 변호사는 미국 공공정보 활용 사례를 통해 국내에 적합한 상용화 모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④ 양오석 고려대 교수는 “공공정보와 적극적 활용을 통해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정보활용법은 공법(公法)? 혹은 사법(私法)?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공정보의 활용을 공법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지적재산권으로 대표되는 사법적 측면을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자 간 논쟁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영대 변호사는 “공공정보 서비스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의 활용 권리, 즉 이용권이 명문화돼야 한다”며 사법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특히 “공공정보는 주인이 없는 정보가 아니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일종의 재산”이라며 “따라서 공공정보 관련 법률에서는 지적재산권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준형 교수는 공공정보를 사법적으로 규정할 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홍 교수는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은 창작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공정보의 전 범위를 대상으로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타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공정보의 활성화라는 대전제와도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며 사법적 접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대 변호사는 “공공정보는 사법 혹은 공법, 어느 한 측면에서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다만, 지금까지의 공공정보에 대한 논의가 사법적 측면이 거의 배제된 채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공법과 사법 간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공정보 활용 관련 법안은 향후 법 제정 과정에서 관련 법안의 성격 논쟁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공공정보 관련 법령으로는 정보화촉진 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공공정보의 활용 근거로 삼기에는 그 입법 취지가 미약한 것이 현실. 특히, 공공정보 활용관련 조항이 있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하 온디콘법)마저도 매우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홍준형 서울대 교수는 “공공정보 활용에 관해 규정한 온디콘법도 선언적 규정이라 실효성이 없다”며 “특허법 등 개별 입법 사례가 있지만 광범위한 공공정보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공정보가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면 특정기업 혹은 개인에게 독점적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교수는 관련 법 제정은 물론 공공정보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공공-민간의 역할과 지원에 관한 심의 기구와 통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영대 변호사(법무법인 수호)는 미국 공공정보 활용 사례를 통해 국내에 적합한 상용화 모델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영대 변호사는 “미국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은 공공 목적과 사적 수단이 결합된 것이 특징”이라며 “실제로 미국 주정부 등에서는 공공정보에의 접근이라는 공공 목적을 민간기업의 활용이라는 사적 수단을 통해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사례로 전국 정보 컨소시엄(National Information Consortium: NIC)과 INK(Information Network of Kansas)의 예를 들었다. 이중 INK의 경우 한 달 평균 60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미국 내 18

개 주에서 자기재원조달 모델로 채택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정보 활용의 경제적 가치 측정’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양오석 고려대 교수는 “공공정보 활용의 경제적 가치는 유럽의 경우 680억유로에 해당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시장 규모는 수수료 라이선스 부과로 발생하는 소득손실분을 상쇄하고 도 남을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이번 행사의 오후 세션에서는 공공DB 유통가격 산정 방안, 국가교통DB구축사업 개요, 기업정보 DB 활용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고, 공공-민간 협력 프로젝트로 포스닥의 식품정보종합안내시스템 구축사업, 한국JS데이터시스템즈의 운동처방지도 시스템 사례 등이 발표됐다. ☺